

감사원 건축분야(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감사원 건축분야(7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감사원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근무예정부서
건축	시설주사보(7급)	2명	감사원(서울시 종로구) * 대전 등 지방소재 부서에서 순환근무 할 수 있음	감사부서 등 전 부서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상세 내용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직급	직무 내용
시설주사보(7급)	▪ 감사 업무 전반 수행

3.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산정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4에 따른 봉급과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이 지급됨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4에 따른 봉급표 >

호봉 계급	1	2	3	4	5	6	7	...
7급	2,472,100	2,493,100	2,539,000	2,610,800	2,710,600	2,826,000	2,942,100	...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5. 응시자격 요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2026. 8. 21. 예정)]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따른 스톱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적용 범위)】

- ④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도 포함)에는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소집해제)예정자

□ 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2026. 8. 21. 예정)]

응시자격 요건(① 또는 ② 충족)
① 아래의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② 아래의 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관련분야) 건축, 건축안전, 건축설계, 공사관리 등
※ 자격요건 고려사항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u>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u>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장)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인정될 수 있음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026. 7. 21.)]

내 용
○ 건축공학 등 유사전공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우대요건 고려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6.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 부합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소극적 서류전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 기준에 따라 적극적 서류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지원동기의 타당성, 관련 내용의 논리성·독창성·충실성 등)
 - 직무연관성(경력분야와 직무 분야간 적합성·연관성 등)
 - 직무수행능력(직무 이해도, 관련 내용의 충실성·적절성 등)
 - * 경력증명서에 의해 관련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우대요건 : 건축공학 등 유사전공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위 4가지 심사점수를 합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합격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 및 면접을 실시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면접시험 방식

- PT면접 : 주요국가시책으로부터 감사초점·감사방법 등을 도출해내는 능력 평가
 - 개별면접 : PT면접 후 자기소개 및 면접관과의 개별 질의·응답
- ※ 인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7.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26. 8. 3.(월)

나. 인성검사일(예정): 2026. 8월 중

다. 면접시험일(예정): 2026. 8. 21.(금)

- 인성검사,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후 개별통보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6. 9. 1.(화)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7. 10.(금) ~ 7. 21.(화)

나. 접 수 처 : (우편번호: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인사혁신과(인사운영팀) 채용담당자 앞

-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 겉면에 응시분야 및 직급 기입

(예시) 건축분야(7급) 응시원서 재중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방문·택배·퀵서비스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기간 내에 접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접수일 이전 소인분은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

※ 응시번호는 7. 27.(월) 18시 문자로 개별 통보, 통보받지 못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확인

- 응시번호 미교부·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라. 유의사항

- 응시요건, 우대조건 등과 관련하여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이력서 등)에 누락 및 착오 기재가 있거나 기재 내용이 미흡할 경우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로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경력사항(법인명, 근무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등), 학위·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일자, 논문 및 연구실적 제목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 학위, 자격증, 논문, 연구실적 등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한 모든 내용은 면접시험 종료 후 사실 여부를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확인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은 면접시험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공고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용 포기자로 간주 되어 최종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및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문의 : 감사원 인사혁신과 인사운영팀(☎02-2011-4936)

9. 제출서류

※ 직무와 무관한 증명서, 자격증 등은 제출하지 말 것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서식 제1호】

나. 응시원서 1부 【서식 제2호】

-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가능) 1매 : 7급(7,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응시원서 제출일 기준)가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면제

다. 이력서 1부 【서식 제3호】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라.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서식 제4호】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이내) 【서식 제5호】

바. 기술사·기사 자격증 사본 1부(관련 직무분야에 한함)

사. 관련 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소속·성명·연락처(미포함시 하단 별도 기재)를 반드시 확인
- 근무기관의 증명서 서식으로 발급하되, 증명서 서식에는 없지만 기재가 필요한 내용은 발급 담당자에게 기재요청하여 발급받거나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를 미제출하거나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또는 ① 근무기관명, ② 근무기간, ③ 담당업무, ④ 근무형태(근무 시간) 항목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근무경력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 관련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련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경우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분야 경력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아.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전형위원 제척·기피,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자.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여성도 제출)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 제6호】

카.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서식 제7호】

10.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자격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사실증명신청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즉시발급증명-소득금액증명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라.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응시요건)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 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1개월

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차.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감사원 인사혁신과 인사운영팀(02-2011-49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기관	응시분야	응시직급
	감사원	건축	7급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작성 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2. 응시원서	
3. 이력서	
4. 자기소개서	
5. 직무수행계획서	
6. 기술사·기사 자격증 사본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주민등록초본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9.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주1: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 표시

주2: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집계를 사용하여 편철(스테이플러, 견출지 사용금지)

<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건축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감사원장 귀하

※ 응시번호	채용담당자 기재예정								성명	
응시직급	7급								복수국적 해당여부	
응시분야	건축									
주민등록 번호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 전자수입인지는 별도 첨부)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7급 / 응시분야 : 건축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주민번호는 앞자리 수 모두와 뒷자리 중 맨 첫번째 수만 기재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응시수수료 해당 금액(7급: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응시원서에 붙이지 않고 응시원서 뒤에
첨부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응시원서 제출일
기준)가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면제
7.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

<서식 제3호>

경력채용 이력서

가. 공통 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건축	응시 직급	7급	성 명	

나. 응시 자격 (기술사 · 기사)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26. 1. 1. (연월일 모두 기재)	

다. 응시 자격 (기사 자격 취득 후 근무경력, 해당자에 한함)					
경 력	근무기관 (부서포함)	근무기간	직위(급)	주당 근무시간 ^{주)}	담당업무
	0000부 (◇◇팀)	'22. 1. 1. ~ '24. 12. 31. (연월일 모두 기재)		40시간	

라. 우대요건 해당 여부 : “해당함” 또는 “해당없음”			
학 위	학위 종류	전공 분야	취득일
	석사 / 박사		

주: 근로계약서 또는 법령상 주당 근무시간(초과근무 시간 제외)을 뜻하며, 근무시간 또는 장소가 정해진 근무가 아닌 경우는 별도의 설명 기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이 력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
2. 기술사·기사 자격은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3. 경력(재직)증명서상의 내용(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등)과 동일하여야 하며,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본 제출
4.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경력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 근무 기간과 근무 월·일수를 모두 기재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근무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시 2년 인정
 -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5.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석사이상 학위가 있는 경우 학위 종류, 전공 분야, 취득일을 작성
6.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가급적 1장으로 작성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및 공란은 삭제
 - ※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력 및 자격증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함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 필) 함께 첨부

<서식 제4호>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자 기 소 개 서

1. 자신의 성장과정 및 개인특성, 성격(장/단점)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2. 감사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에 대하여 본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3. 인생에서 가장 열정을 쏟은 일 1가지와 그로 인해 얻은 성과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4. 예상치 못한 문제의 발생으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5. 타인(상급자 또는 하급자)과의 의견 충돌 등으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know-how)가 있다면 본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6.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선택)

※ 글씨크기: 13, 줄간격 18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A4용지 3매이내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출신학교명, 출생지, 부모의 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글씨크기 및 유의사항은 삭제 후 작성 요망

2026. . .

작 성 자 : (서명)

<서식 제5호>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직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각오와 직무수행계획 또는 기타 기술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글씨크기: 13, 줄간격 18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A4용지 3매이내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출신학교명, 출생지, 부모의 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글씨크기 및 유의사항은 삭제 후 작성 요망

2026. . .

작 성 자 : (서명)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감사원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선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응시자의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화·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감 사 원 장 귀하

<서식 제7호>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사유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사유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 23, 24조, 시행령 제18, 19조
-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범죄경력정보 등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사유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 17조
- (4)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 자격증, 경력사항 등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사유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 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 17조
- (5)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 (2) 제공하는 민감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 (3) 제공받는 자의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사유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 보존기간 :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 17조
- (4)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생년월일:

성명:

(서명)

감사원장 귀하

별첨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채용예정직급	근무예정부서
감사원	시설주사보	감사부서 등 전 부서

주요업무	○ 감사업무 전반 수행 -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 - 국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감찰 수행 -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문제해결능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 감사업무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지식 ○ 건축 분야 관련 정책 및 법률에 관한 전반적 지식 ○ 감사자료를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 ○ 국내·외 건축 분야 현안에 대해 조사·분석하는 데 필요한 지식
------	--

응시자격 요건 (① 또는 ② 충족)	① 아래의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② 아래의 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관련분야) 건축, 건축안전, 건축설계, 공사관리 등
우대요건	○ 건축공학 등 유사전공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응시자격 요건”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하고,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충족하여야 함